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가합1025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민 담당변호사 윤성환

피 고 1. B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8. 27.

판 결 선 고 2021. 10. 29.

주 문

1. 피고 B와 소외 C 사이에 2019. 10.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2억 9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에 대하여 판결확정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 2항과 같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2011. 8. 3.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C는 위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서울 광진구 E 대 99㎡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C의 처이다.

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음을 이유로,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에 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7569호). 위 법원은 2018. 4. 27. C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520,807,978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70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2018. 8. 21.부터 2018. 9. 17.까지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임차인 F, G, H, I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900만 원1) 을 반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단52653호로 도시정비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C에 대한 청구금액 2억 9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이하 ‘제1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1. 5.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3357호로 이 사건 매매대금 520,807,978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

마. 원고는 2019. 5. 16. 도시정비법 제70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임차인 J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9.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단51637호로 도시정비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C에 대한 청구금액을 6,0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이하 ‘제2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피고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바. C는 2019. 10. 22.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출급청구를 하였고,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이하 ‘이 사건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462,120,104원[= 원금 460,807,978원(= 이 사건 공탁금 520,807,978원 - 제2가압류 청구채권액 60,000,000원) + 이자 1,550,966원 - 소득세 등 공제액 238,84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 B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사. 피고 B는 2020. 1. 22. 서울 광진구 K 대 148.1㎡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C를 상대로 대위변제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4865호), 위 법원은 2020.

8. 28. C에 대하여 원고에게 2억 6,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C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10, 12, 13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 을 2~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70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2018. 8. 21.부터 2019. 5. 16.까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6,900만 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증여계약일인 2019. 10. 24.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1991년경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민법 제830조 제1항 참조),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C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 역시 C의 소유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C가 2019. 10. 22. 이 사건 공탁금 중 462,120,104원을 출금하여 이를 피고 B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B이 2019. 10. 24.경 위 공탁금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와 피고 B 사이에는 2019. 10. 24. C가 피고 B에게 위 공탁금 462,120,104원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게 되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탁금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찾아 2019. 11. 5.까지 이주를 마치면 C에게

입주권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C는 원고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주합의를 하여 이를 이행하고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한 것인데, 당시 이 사건 공탁공무원이 가압류된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460,807,978원을 출급청구서에 기재하라고 하여 그 지시대로 출급청구를 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주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선의의 수익자 여부는 그 선의임을 주장하는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공탁금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이 공탁금출급일 직후에 이루어진 점, C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나 피고 B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이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원리금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321,974,575원[= 269,000,000원 + 269,000,000원 × 0.12 × (1 + 234/365, 2020. 1. 6.부터 2021. 8. 27.까지의 기간),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억 9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참조),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공탁공무원은 C의 공탁금출급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제1, 2가압류 청구금액 합계 2억 6,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1,807,978원(= 520,807,978원 - 269,000,000원)만을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제1가압류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2가압류 청구금액인 6,000만 원만을 제외하여 C에게 460,807,978원을 교부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1가압류 청구금액 2억 9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는 이 사건 공탁공무원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그르쳐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억 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공무원이 C의 공탁금출급청구에 관하여 제1가압류의 청구채권액을 제외하지 않은 채 C에게 공탁금을 교부하였더라도, 2)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로서는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탁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것이 곤란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공탁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C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를 상대로 제1가압류의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2억 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카단50817호로 피고 B에 대한 청구금액 2억 900만 원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위 가압류 외에 다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가압류의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추심이 곤란해지는 사정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앞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에 한정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호, 판사 김서현, 판사 송현정

1)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F에게 2018. 8. 21. 3,500만 원, G에게 2018. 9. 28. 3,200만 원, H에게 2018. 9. 7. 및 2018. 9. 11. 2회에 걸쳐 9,200만 원, I에게 2018. 8. 29., 2018. 9. 16. 및 2018. 9. 17. 3회에 걸쳐 5,000만 원 등 합계 2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제1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이상 위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참조).